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가합514806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윤

피고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마상미

변론 종결2019. 10. 2.

판결 선고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1,789,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3.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이 D으로부터 수급한 전북 E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30,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13.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기성지급)

2) 기성금: 월말마감 익월말 전자어음 100%(결재일로부터 90일 ~ 120일, 만기수령조건) 지급. 단, 전자어음 지급시 원고는 계약체결 후 C이 지정하는 은행에 계좌개설을 하여야 하며, C은 60일 초과 지급시 이에 따른 전자어음 결재 수수료를 지급한다.

3) 원고와 C은 2018. 6.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3. 13.부터 2018. 6. 30.까지에서 2017. 3. 13.부터 2018. 7. 9.까지로 변경하였고, 2018. 10.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630,000,000원에서 1,67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 C은 2017. 4. 10.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411,789,470원, 보증기간 2017. 3. 13.부터 2018. 9. 28.까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이 보증서는 대금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해당 채무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보증기간 내에 반드시 보증기간의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는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5.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채무

다. 하도급공사대금 지급

- 1)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7. 8. 16.부터 2018. 10. 16.까지 14회에 걸쳐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 2) C이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전자어음 중 아래와 같이 2018. 6. 25.부터 그 이후에 발행한 총 4장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은 C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다.

2018. 6. 25.	472,234,420	2018. 11. 9.	2018. 5.분
2018. 8. 6.	111,290,599	2018. 11. 16.	2018. 6.분
2018. 9. 4.	29,139,264	2019. 1. 25.	2018. 7.분
2018. 10. 16.	39,922,000	2019. 1. 11.	2018. 8.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어음은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일이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하도급공사대금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11,789,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및 약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지급기일, 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여야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일은 모두 2018. 11. 9. 이후로써 보증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등 참조).

다.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기성공사대금에 관하여 월말마감 후 익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어음 중 일부는 각 기성공사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C이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채무불이행에 빠진 다음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기성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만기일을

발행일로부터 90 ~ 120일 사이로 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② 원고와 C은 위와 같이 기성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기성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어음의 만기일로 유예하기로 하는 의사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일은 모두 발행일로부터 90 ~ 120일 사이이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 이외에도 기성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도과한 시점에 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적이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최고하거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5호에서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일(어음지급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채무를 보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C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면 피고의 보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에 따른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5호는 보증채무의 대상에 관해 규정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음 등이 발행된 경우에는 기존채권의 변제기가 아니라 어음 등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보증채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을 위해 어음이나 그에 준하는 대체결제수단이 발행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변제기를 어음 등의 만기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어음 등이 교부되어 지급기일이 연장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약관은 피고뿐만 아니라 F공제조합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도 특기사항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내용을 약관규제법에서 정하는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약관규제법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인 '고객'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하는데(약관규제법 제2조 제3호), 피고가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피고의 조합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제3자(하수급인)을 위한 계약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그 조합원인 C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참조), 하수급인인 원고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급부를 수령하는 수익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고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C이 채무불이행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그 만기가 보증기간 이후로 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정수

판사김새미

판사김경준